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14일 심현정 의원이 발의하였고, 2019년 1월 21일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임.

1. 제안이유

지난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연말인 제2차 정례회(11월)로 조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안 제4조제1항의 “제1차 정례회”를 “제2차 정례회”로 개정

3.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1년간의 군정업무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 감사시기를 사업 마무리 시점인 제2차 정례회(11월)로 조정하고자 것으로,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시기를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